

# 연구윤리 강령

## 서 문

이 강령은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 회원이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고, 기술인이 지켜야할 보편적 윤리규정을 제정하여, 회원이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,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,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,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1조(사회적 책임)

- 회원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위원회는 윤리규정의 개정 및 위반에 대한 심의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.

### 제2조(기본 연구윤리 심의)

-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, 진실성(integrity)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, 계획,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.
- 날조, 변조,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심의 한다.
- 윤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고 보충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.

### 제3조(보편성의 원칙)

회원은 인종, 성, 종교,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,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### 제4조(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)

회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.

### 제5조(법령의 준수)

-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 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.
-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“연구윤리규정”을 제정하여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.

### 제6조(연구대상의 존중)

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하며,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.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.

### 제7조(연구 자료의 기록 · 보존)

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,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,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.

### 제8조(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)

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, 설계, 수행,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 과정에서 참고 ·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.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.

**제9조(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)**

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,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.

**제10조(이행상충(Conflicts of interest)에 대한 대처)**

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이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.

**제11조(연구환경 조성)**

회원은 책임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, 공평성,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.

**제12조(윤리 교육의 실시)**

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.

**부 칙**

1. 본 강령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강령의 개정안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강령의 개정안은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